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On Plans to Improve and activate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 Technicians

안경석\*, 구승환\*, 류준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yong-Sok An(stagejob@gmail.com)\*, Seung-Hwan Gu(gsh999@hanmail.net)\*,  
Jun-Ho Yoo(junhoyoo@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의 국가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무대예술분야 국가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무대예술기술 분야의 주요 쟁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제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제도가 공연장, 그중에서도 대형 공공 공연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로 비전문적 운영 주체의 문제와 연 1회, 서울 만이라는 검정 횟수, 장소 등의 비편의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 요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도가 공연장 중심 운영에서 공연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공연에 자격 취득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근본적 목적인 공연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들의 처우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에 있어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법 또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improvements by correcting proble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 technicians, which has a relatively weak foundation, compared to other national industrial qualifications.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attempted to seek main issues and development plans in the field of theatrical art technology, while carrying out in-depth interviews for theatrical art technicians.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Firstly, the existing system is mostly focused on performance places, especially large-sized public performance halls. Secondly, as a problem in terms of management, the existing system has non-professional management subjects and non-convenience regarding the number of qualification tests and places only in Seoul and once a year. This study grasped problems based on practical demands of the related industr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us seeking proper solutions. What matters most is that the present system should be converted from performance place-centered management to performance-centered management. In other words, by expanding qualification-acquired experts into all the performances, the system should practical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performances and expanding the treatment of experts, which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ystem. Moreover, it is needed to seek a plan to expand the convenience of applicants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acquiring qualifications.

■ keyword : | Certification System of Theatrical Art Technicians |

## I. 서론

우리나라의 자격증 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순수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1]. 이러한 자격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제도가 직업교육훈련을 이끌어내고 자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자격은 정해진 목표에 따라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평가 활동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격제도는 개인의 능력이 학력과 자격에 의해 평가되며, 자격이 근로자 직업능력의 성과 측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일반적인 기술 분야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1세기 들어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지식, 정보, 문화 분야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 중 문화예술분야에도 해당 분야의 산업적, 국가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자격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도'이다. 1999년 5월부터 시행된 본 자격은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분야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무대예술전문인에 대한 자격제도를 실시, 무대예술분야 전문 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 의해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자격 제도를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무대예술의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증진시키고 무대예술전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무대예술분야의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대예술종사자의 사기양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1].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해 시행된 본 자격 제도가 벌써

13년의 시간이 지나왔고 그동안 2천5백여 명의 무대예술전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최초의 국가자격으로서의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 취득인들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에 반해 해당 자격 제도는 그 자격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운영상의 문제를 갖고 있어 업계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적된 문제는 크게 자격 제도 자체의 문제, 검증 과정의 문제, 그리고 취득 후 활용의 문제 등으로 자격 제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문제, 요구와의 괴리감에서 출발하여 출범 후 1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한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급변하는 문화예술 산업 환경의 변화에 해당 제도가 전혀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고착성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와 문화예술 산업의 빠른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현행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현실적인 제도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격제도 개선방안 수립 시 현행 무대예술전문인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중요하다. 그로인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 산업의 국가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무대예술분야 국가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헌 및 1차 자료를 통해 국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운영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무대예술기술 분야의 주요 쟁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한다. 또한 보다 현실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무대예술전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의 결과와 더불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현황

### 1. 국내 일반현황

#### 1.1 개념 및 특성

현재 국립중앙극장에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 1]과 같이 자격분야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이고 등급은 각 자격 분야별로 1급, 2급, 3급 등 3단계로 되어 있다. 자격 부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객석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방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본 자격증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2].

표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구분	내용
검정기관	국립중앙극장 (2004.1.1. 지정)
자격명칭	무대예술전문인
자격분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자격등급	자격분야별 1급, 2급, 3급
자격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부여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관련법령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

\* 출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 1.2 응시기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응시 기준은 [표 2]와 같으며, 응시 기준이 되는 해당 분야 기술 자격증은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로 되어 있다. 3급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경력자,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며 2급은 3급 취득 후 2년 경과자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 1년 이상 경과자이며, 1급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 자, 또는 해당분야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이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3항에 의한 학력증명서, 실무경력인정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등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급 이상의 응시를 위해서는 실무경력 인정을 받아야한다. 자격제도는 3급부터 단계별로 승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표 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응시기준

구분	응시기준
1급	1.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급	1.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급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안전관리/통신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비교 1.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 1.3 검정내용 및 합격기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검정은 필기검정과 실기 검정으로 실시되며, 그 내용과 합격기준은 [표 3]과 같다. 필기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뉘는데 급수가 높아질수록 전공과목의 비율이 높아진다. 현행 자격시험은 법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무대예술전문인 실기검정 내용 및 합격기준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인 2인 이상의 각각의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평가표에 의하여 채점된다.

표 3. 필기 및 실기 검정 내용

구분	필기				실기		
	공통과목		전공과목		전공과목		
	시험 과목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무대기계	1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 일반	20	무대기계 I, II, III	80	무대기계 I, II, III	80
	2급		30	무대기계 I, II	70	무대기계 I, II	70
	3급		40	무대기계 I	60	무대기계 I	60
무대조명전	1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 일반	20	무대조명 I, II, III	80	무대조명 I, II, III	80
	2급		30	무대조명 I, II	70	무대조명 I, II	70
	3급		40	무대조명 I	60	무대조명 I	60
무대음향	1급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 일반	20	무대음향, II, III	80	무대음향, II, III	80
	2급		30	무대음향 I, II	70	무대음향 I, II	70
	3급		40	무대음향	60	무대음향	60

\* 1차 시험 합격결정기준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 2차 실기 시험의 중점 평가사항  
 - 장치 및 설비의 운영, 조작능력  
 - 실기시험 문제에 대한 판독능력 및 조처능력  
 - 조작능력의 수월성 및 완벽성  
 - 장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장비 및 장비 운용상의 문제 해결능력

\* 출처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1.4 자격 취득자 현황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취득자 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 기준 취득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자격 취득자 현황 (단위:명)

등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합계
1급	174	191	143	508
2급	218	266	195	679
3급	342	391	455	1,188
합계	734	848	793	2,375

\* 출처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2. 무대예술전문인 관련 해외 현황

해외에서는 공인자격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기술 스태프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무대기술인력 단체의 현황은 노

조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IATSE, 영국의 ABTT, 독일의 DTHG를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무대기술 분야의 세계적 협회인 OISTAT(국제 무대미술가, 극장건축가, 극장 기술가 협회)는 무대 미술, 극장건축, 극장 기술에 관련된 지식과 실행의 국제적인 교류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본 기관은 국제적으로 퍼져 있는 기관으로, 각각의 나라에 오직 하나의 단체만이 OISTAT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나라 기관의 회원들은 자동적으로 OISTAT의 회원이 된다. 각 나라의 OISTAT 센터는 오스트리아의 OETHG, 벨기에의 BASTT, 캐나다의 CITT, 독일의 DTHG, 남아프리카의 SAITT, 스웨덴의 STTF, 네덜란드의 VPT, 영국의 ABTT, 미국의 USITT, 한국의 KTA아 외에도 28개국에 그 기관을 두고 있다.

2.1 미국 - 국제 무대기술종사자연맹 (IATSE)

공식적인 명칭은 국제무대기술종사자연맹(IATS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이다. 국제무대기술종사자연맹은 공연장과 영화, TV프로그램 제작사를 포함하는 문화산업분야의 기술인인 예술인 그리고 무대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다. 유니온의 멤버 수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10만 여명에 이르며 현재도 빠른 속도로 그 회원 수와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조명기술자, 무대작업자(목수, 무대조립자), 특수효과 기술자, 음향과 영상의 기술자, 의상요원, 분장과 헤어팀, 극장의 안내원, 티켓 매표와 수표 그리고 공연장을 관리하는 종사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2 영국 - 영국 극장기술자협회 (ABTT)

영국에서 OISTAT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무대기술자협회(ABTT, About the Association of British Theatre Technician)이다. 1961년 시작된 본 협회의 주요 목적은 극장 건설과 무대 기계류, 조명, 음향기계, 음향, 무대장치, 무대 관리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극장의 기술적인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뉴스레터의 편찬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극장 기술자들 사이의 토론을

위한 포럼의 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아니며 구성원들에게 직업적인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는다. 초기 1960년대 중반까지 협회의 회원은 250명 정도였으며, 1970년에 400명으로 늘어났으며 오늘날 회원의 수는 1,700명 가까이 되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밖에도 협회는 안전(safety), IT, 극장 건설(Theatre Planning), 디자인과 고고학(Design & Archaeology)과 같은 흥미로운 단체와 연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출판(advise & publication) 등 필수적인 방법으로 함께 무대예술을 만들어 간다. 런던과 그외 지역의 지부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그 모임에서 회원은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영국 극장기술가협회는 연합의 형태로 극장기술가협회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극장시설의 관계된 전문 무역회사(Theatrical Trading Ltd)와 무대기술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주식회사(Technical Training Ltd)가 있다[3].

### 2.3 독일 - 무대 기술협회 (DTHG)

독일의 DTHG(Deutsche Theater-technische Gesellschaft)는 독일 유일의 OIG 산하 무대기술 협회이다. 이 협회의 정관을 보면, 단체 스스로를 연극, 영화, TV, 쇼 등의 영역에서 기술적이거나 예술적인 전문영역을 위해 형성된 전문협회로 정의한다. 이 협회의 회원은 행사를 계획하고, 장치를 만들고 추진하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협회의 목적이다. 즉 회원으로는 전문적인 기술자들, 또는 그들의 작업을 사용하는 회사, 문화예술분야 관계자나 문화정책을 위한 연구소 등도 포함된다. DTHG는 그들의 과학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무엇보다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개인적인 체험을 동료들과 교환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또는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 실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도록 노력한다.

이상과 같이 해외의 경우 무대예술 기술 분야에서 협회의 기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협회는 노동조합(union)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대예술

제작에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협회의 가장 큰 역할은 협회원들의 신규 및 보수 교육과 무대예술제작에 협회원들의 폐쇄적 참여, 제작 단계에서 협회원들의 권익 및 복지 보호, 정당한 대가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따라서 모든 무대예술제작에 있어 해당 협회와 별도의 제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제작시에도 협회의 규정에 맞춰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III. 무대예술전문인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무대예술전문인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나 1999년 동 자격 제도 운영이후 간헐적으로 해당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어 학문적 관심 또한 최근 많이 생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미진 외 2인(2001)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증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자격 기준, 시험, 분야로 나누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외의 사례를 고찰하여 제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3]. 허은영(2007)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를 통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가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자격제도의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 내용의 명확성과 규제 수준의 적절성, 행정 규제 집행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박영정(2009)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자격자 수급구조의 개선과 자격 종목 세분화 및 확대를 제안하였다[4]. 이장원 외1(2010)은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와 걸맞은 운영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5]. 이주영(2011)은 2000년부터 도입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제도가 무대예술전문인의 고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검정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문제와 자격검정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 자격 세분화 및 고용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하였다[6].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에 관한 연구는 자격 검정에 관한 내용과 고용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특히 본 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의무고용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 IV. 연구 방법

##### 1.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 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하며, 대화가 전제된 면접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7].

##### 2. 조사대상 및 실시

심층면접 관련 선행연구 검토결과 심층면접 방법에는 약 10~15명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접대상 선정 시 연구관련 분야를 사용해보거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면접의 대상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무대예술전문인 중 관련 공인자격 시험에 응시한 경험을 1회 이상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표 5]와 같다. 연구 윤리에 따라 응답자의 성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표집 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13명으로 남성 9명, 여성 4명, 평균 연령은 36세,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2명, 전문대학 5명, 대학교 졸업이 4명, 고등학교 졸업이 2명이었다. 근무 연수는 15년 이상이 3명, 10년 이상이 15년 미만인 10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조명 6명, 음향 3명, 기계 4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무대예술전문인 시험에 응시한 경험

으로는 평균 2회로 나타났다.

표 5. 심층면접자의 인적사항

No.	성별	연령	학력	분야	근무 연수	응시 경험
A	남	41	고졸	조명	17	3
B	남	40	고졸	기계	15	2
C	남	39	대학원	조명	16	1
D	남	37	전문대	음향	10	2
E	여	41	대학원	조명	13	2
F	여	42	전문대	조명	12	4
G	여	35	대학	조명	13	3
H	남	35	대학	기계	11	3
I	남	33	전문대	기계	12	3
G	여	33	전문대	음향	11	2
K	남	31	대학	음향	10	1
L	남	36	대학	조명	10	4
M	남	34	전문대	기계	10	3

#### 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면접을 통하여 얻었다. 자료의 분석에 앞서 조사한 면접대상자들의 기록한 내용은 면접 후 전사, 메모의 내용을 컴퓨터로 문서화 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은 Irving Seidman[8]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전사 및 메모로부터 발췌한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파일의 내용들을 읽고 중요한 내용이나 흥미로운 내용에 표시를 하고 내용을 축소하여 내용별 범주로 조직화 하였다. 또한 범주들 내에서 발췌한 내용들 간의 연결고리와 패턴을 찾아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 설명, 해석하여 대안을 제시 하였다.

#####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문제점

###### 1.1 시험 일정 및 지역

“얼마 전 제자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을 비춘 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시험은 지났고, 제자는 졸업반이어서 이 시험을 추천할 수가 없었다. 자격제도가 발전하려면 시험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면접자 C)

“난 현업에 종사하면서 시험이 아닌 경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올라가는 상당히 어렵다. 솔직히 지방에서 이 자격을 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말이나 될 법 한가? 무슨 공인증개사도 아니고... 일단은 파일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 접근성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면접자 H)

박영정(2009)와 이장원(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현행 자격시험은 법 제 14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상경하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험의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기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경우 전국에 걸쳐 시험이 실시되어 있어 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1.2 의무배치 기준 및 관련 법제도

“의무배치... 점점 의미가 없어져... 이미 어지간한 공연장은 다 의무배치를 하고 있고, 이걸 어디 더 써먹을 곳이 있나?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면접자 E)

“의무배치 기준은 찾아보았는가? 솔직히 의무배치를 해야 하는 공연장이 몇 개나 되는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극장이 대학로 공연장 같은 소극장인데 이게 어디 실효성이 있어 보이나?” (면접자 J)

“관련법? 법을 적용받게 되는 극장이 몇 개나 될까? 해당되는 극장의 수도 적거니와 요즘 야외공연도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야외공연은 무슨 법으로 다스리나?” (면접자 G)

“과태료도 문제가 있다. 솔직히 이 법에 적용받는 것은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과태료 부가 주체가 지자체라고 알고 있다. 그럼 누가 그걸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가하겠나?” (면접자 M)

무대예술전문인의 의무배치 대상은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며(공연법 제16조 및

42조 제3항, 공연법 시행령 제21조), 배치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배치기준

배치대상 공연장	등급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무대 기계	무대 조명	무대 음향
객석 1천석 이상	1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인	1인	1인

본 설문문의 결과는 허은영(2007)이 규제 내용의 명확성과 규제 수준의 적절성, 행정 규제 집행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무대예술전문인의 심층인터뷰 결과,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 배치 기준이 매우 적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의무 배치 기준을 1인 이상으로 한 점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객석 500석 이상의 공연장의 경우 공연 최적의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3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 배치기준을 어길 시 공연법 시행령 24조 1항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는 실효성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현업 종사자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법 제도상의 문제점이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객석과 무대기계설비의 구동부수(驅動部數)만으로 자격등급을 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객석 자리를 넓혀 편안히 공연 감상을 위해 좌석수를 줄여 객석수가 500석 미만이라면 의무배치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공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오페라 ‘아이다(Aida)’와 같은 대형 공연, K-pop의 규모 확장에 따른 대중가요 공연 등은 체육관 및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자격은 실내공연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총 공연장 수는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총 927개로 그 중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273개로 29.4%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공공 공연장만은 219개로 전체 공연장 중 23.6%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문화예술전문인의 의무 채용이 규정하고 있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667명으로 이 인원은 2010년 기준 자격 취득자 2,375명의 28%에 불과한 인원이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현재 자격 제도는 공연의 질적 측면에서도, 고용의 측면에서도 20% 내외의 영향력만을 확보하고 있는 제도이며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죽은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표 7. 객석별 공공 공연장 현황 및 의무채용 인원

객석 규모	총 공연장 수	비율	공공공연장수	채용기준	총 의무 채용인원	비고
1,000석 이상	75	8.1	57	3명	171명	1급, 2급
500석 ~ 1,000석미만	198	21.4	162	3명	486명	3급
300석 이상~ 500석 미만	185	20.0	117	-	-	
100석 이상 ~ 300석 미만	344	37.1	123	-	-	
100석 미만	52	5.6	5	-	-	
모름	73	7.9	21	-	-	
합 계	927	100	485		657명	

\*자료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2009공연예술실태조사, 2010, pp117~118.[10]

결국 공연장 중심의 현행 제도, 더욱이 공공 공연장 중심의 제도를 통해서도 제도 시행 목적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뉴욕의 오프브로드웨이 극장의 전형적인 수용 인원이 소극장의 경우 199석이며 규모가 큰 극장의 경우에도 300석 미만의 좌석 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방법과 조합 규정이 200석 이상, 300석 이상에서 큰 폭의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여력이 있더라도 일부러 좌석 수를 줄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1.3 취득 후 처우의 문제

“자격증? 좋지... 남만같은 나도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 그런데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따면 뭐하나? 이게 무슨 공인증개사나, 일반 다른데서 따는 기사자격증 이런 거랑 같나? 차라리 이 자격 공부할 시간에 다른 자격증 공부하는 걸 추천한다.” (면접자 K)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해서 뭐하지? 뭐 수당이라도 챙겨주나?” (면접자 D)

“전 프리랜서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처음에 자격제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접자 D)

본 심층인터뷰 결과 장미진(2001)의 자격 내실화 방안, 박영정(2009)의 자격 수급구조의 개선, 이장원(2010)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이주영(2011)의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취득 후 처우에 대한 문제점들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무대예술전문인들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해보면 ‘시험의 일정이나 지역’ 항목에서 주장했던 문제점과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이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과 비교해보았을 때 일정 관련 부분, 지역 관련 부분 외에도 자격증 취득 후 처우에 관련된 부분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나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격수당이 지급되지만, 본 자격을 취득한 무대예술전문인의 경우 자격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물가정보자료에 의하면 1급 203,280원, 2급 156,130원, 3급 105,450원으로 노임이 고시되어 있으나 실제 처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더욱 본 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실정이다. 현행 자격제도는 극장에서의 채용기준으로 의무 배치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층인터뷰 결과 ‘시험제도 운영의 문제점’, ‘관련 법 제도’, ‘취득 후 처우의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V. 개선방향

### 1. 제도의 실효성 부분(배치 기준의 재정립)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무대예술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무대예술의 발전과 이를 위한 무대예술기술인들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이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법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공연 중심이 아닌 공연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의무채용 기준 및 기타 기준들은 공연장 기준으로 되어 있어, 포화상태라 할 수 있으며 기존 극장에 적용이 어렵다. 또한 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장이 많은 관계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대형 체육관 공연, 야외무대 공연의 경우는 규정의 밖에 존재해 법의 적용이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제도의 시행이 공연장 중심이 아닌 공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연을 중심으로 규모를 산정하여,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배치 하였을 때 공연을 허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공연 중심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공연 제작비의 상승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공연 제작자들의 반발이 우려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떤 무대예술공연도 무대예술전문인들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대형 공연의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추가 발생 비용 없이 공연 예술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해당 기술자의 자격증 취득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정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무대예술 기술자들 또한 자격 제도내로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 된다.

표 8. 배치기준 개선안 A (제작비 기준)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항목	현행	개선안
배치대상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대형공연 (제작비 10억원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중형공연 (제작비 1억원 이상 10억미만)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소형공연 (제작비 1억원 미만)
공연 장소	실내	실내/실외 (모든 장소)

표 9. 배치기준 개선안 B (배치대상 수정)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항목	현행	개선안	비고
배치대상 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객석 800석 이상	자격 종류별 배치 기준은 동일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객석 300석 이상 800석 미만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객석 100석 이상 300석 미만	
공연 장소	실내	실내/실외 (모든 장소)	

둘째, 소규모 공연의 제작시(500석 미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때 지원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본 제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저가의 예산으로 제작을 진행하는 소규모 공연제작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저예산으로 인하여 공연 제작에 무대예술전문인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상의 지원일 것이다.

이상의 공연 중심의 무대예술기술자격 운영은 단순히 해당 전문가들의 활용을 넘어 본 자격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인 공연의 질적 완성도 향상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기본 소양 및 자격이 있는 무대예술전문인들이 공연에 참여를 통해 우리 공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제작 스태프가 극장에 들어가 작업할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이 필요사항은 아니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

외의 사례에서처럼 협회(조합)의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협회(조합)의 개념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은 굳이 공연장 소속이 아니어도 된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형태의 전문가에도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를 등록 공연장이나 협회가 인정하는 공연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 2. 시험 운영상의 부분

공연법 제 14 조 제 1 항에는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2003년 한 번을 제외하고 매년 1회의 시험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 1회 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한 번 시험을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실제로 기사 및 산업기사 등은 연 3회 실시가 일반적이다. 최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시험응시자의 수가 늘고 있음에 따라 시험의 회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맞추어서 시험의 회수를 연 2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험장소 또한 현재 서울 1개 지역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한다. 응시자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예컨대 현행 서울에만 국한되어있는 시험을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의 광역시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격 검정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 공연법 제15조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가장 공신력 있고 전문성을 제고해볼 때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국외의 사례에서처럼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험영역 및 출제, 경력인정의 업무는 검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격제도의 투명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이다.

## 3. 취득 후 처우 개선

취득 후 처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격을 취득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격수당에 대한 부분과 둘째, 자격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자격수당에 관한 부분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공계 고급인력 고용지원금 제도와 같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무대예술전문인 지원제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노임을 실제 처우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실정이었으나 공연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공연의 규모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하게 됨으로써(대·중·소규모) 자격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치기준을 공연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실수요 요구를 늘렸기 때문에(29.5% → 86.6%) 자격을 보유한 무대예술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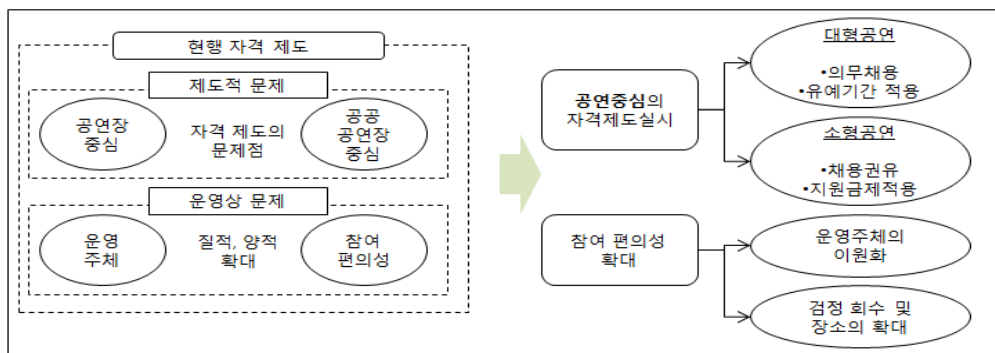


그림 1. 무대예술기술전문인 자격 제도의 개선 방안

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지난 1999년 실시 이래 지속되고 있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기 위해 현장지향성을 강화하고, 공연예술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격 체계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국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현황 및 특징, 시사점 등을 벤치마킹 하였다.

기존 무대예술전문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현황 조사 및 선행연구 정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며, 현업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대예술전문인을 대상으로 국내 자격제도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실행하여 현업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 본 제도의 문제는 첫째, 본 제도가 공연장, 그중에서도 대형 공공 공연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연장 공연 중 25% 이내의 공연에만 본 제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비 공연장에서의 대형 공연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연이 아닌 공연장 위주의 규제는 제도 출범의 목적인 공연의 질 향상은 물론 전문인들의 취업에도 제한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로 비전문적 운영 주체의 문제와 연 1회, 서울 만이라는 검정 횟수, 장소 등의 비편의성에 대한 문제이다. 셋째, 취득 후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로 취득을 해도 처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첫째, 공연장 중심이 아닌 공연 중심의 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대형공연에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한 상태에 의무 채용을, 소형공연의 경우 전문인의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공연질의 실질적 향상 도모 등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참여 편의성 확대를 위해 행정과 검정의 이원화 운영, 연 2회 검정 실시 및 광역시로의 검정 장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공연의 규모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하게 변경함으로써(대·중·소규모) 자격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배치기준을 공연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실수요 요구를 늘렸기 때문에 자격을 보유한 무대예술전문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활성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 그리고 해결 방향의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의 제시와 함께 향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점의 제시인 동시에 정부에서는 향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개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산업계는 물론 학계 전반의 폭 넓은 논의와 연구의 활성화도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 법률 제10723호
- [2] 이영두, “문화예술 전문직(예술경영인)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8집, pp.1-20, 2005.
- [3] 장미진, 박동우, 장혜숙,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 증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4] 허은영,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규제순응도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5] 박영정,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인증제도 개선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22집, pp.33-57, 2009.
- [6] 이장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 pp.258-274, 2010.

- [7] 이주영,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 도입이 고용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문음사, 2006.
- [9] 박혜준, 이승연,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3* 판, 학지사, 2009.
- [10] 예술경영지원센터, *2009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류 준 호(Jun-Ho Yoo)

정회원



- 2005년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문화산업경영(경영학석사)
- 2011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공학박사)
- 2011년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마케팅, 문화콘텐츠 기획, 문화콘텐츠 정책, CT

저 자 소 개

안 경 석(Kyong-Sok An)

정회원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방송영상정보학 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 박사과정
- 2010년 ~ 현재 : 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관심분야> : 공연조명, 디지털조명, 공연정책, 방송 기술

구 승 환(Seung-Hwan Gu)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 전공(공학석사)
- 2010년 9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공학정책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산업공학, CT, Value Design